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 청소년단체협의회 설립·운영 지원 조례안

충청북도 청소년단체협의회 설립·운영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21
----------	-----

2023. 3. 24.(금)
정책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김정일 의원 등 7명

나. 제출일자 : 2023년 3월 3일

다. 회부일자 : 2023년 3월 6일

라. 상정일자 : 2023년 3월 16일

- 제40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김정일 의원)

가. 제안사유

- 충청북도 청소년단체협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내 청소년단체에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규정(안 제1조)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함(안 제2조)
- 청소년단체협의회 설립 및 운영 근거 규정(안 제3조)
- 청소년단체협의회에서 수행할 수 있는 사업 등 규정(안 제4조)
-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와의 협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3. 검토보고 요지 (김대진 수석전문위원)

가. 제출배경

- 도내에서는 22개의 청소년단체를 중심으로 청소년 활동 및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들 단체 활동의 구심적 역할을 하고 청소년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청소년단체협의회는 부재함.
- 「청소년 기본법」 제41조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충청북도 청소년단체협의회 설립을 위해서는 조례 제정이 필수 불가결함.
- 이에, 「충청북도 청소년단체협의회 설립·운영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충청북도 청소년단체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협의회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내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 및 보다 체계적이고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 ※ 10개 시·도에서 청소년단체협의회 설립·운영 근거 마련
 - 근거 부재(2) : 충북, 강원

나. 주요내용 검토

-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으며, 본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41조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됨.
- 안 제2조는 상위 관련 법령인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단체”를 정의하고 있으므로 용어 정의상 문제가 없음.
- 안 제3조는 사전에 충청북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청소년단체협의회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로 설립할 수 있다는 협의회 설립 근거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협의회에서 수행할 수 있는 사업들이 비영리·공익적 목적의 사업에 해당하므로, 안 제3조의 협의회 설립 근거와 운영에 관한 규정은 타당함.
- 안 제4조는 협의회에서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을 청소년단체가 행하는 사업과 활동에 대한 협력 및 지원, 국내외 청소년단체와의 협력 및 교류, 청소년문제와 활동에 대한 조사연구, 우수회원단체와 모범청소년 지도자 및 청소년포상, 청소년지도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권익 증진 및 교류사업 등으로 규정하였으며, 청소년 육성을 위한 비영리·공익적 목적의 사업으로 협의회 설립의 취지 및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됨.
 - 또한,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이는 「청소년 기본법」 제41조제2항을 준용한 것으로 타당함.

1) 제41조(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 ① 특정지역을 활동 범위로 하는 청소년단체는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의 운영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안 제5조는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와의 유기적인 협조 및 지원체제 확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청소년 기본법」 제40조제1항제 9호는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활동 중 하나로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에 대한 협조 및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 또한 한국 청소년단체협의회와의 유기적인 협조 및 지원체제 확립을 통해 효율적인 협의회 운영 및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됨.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 제정안은 「청소년 기본법」에서 위임된 충청북도 청소년단체 협의회 설립 및 운영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협의회 공익적 성격과 역할을 고려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법하게 제정한 것으로 판단됨.
- 향후, 충청북도 청소년단체협의회 설립으로 도내 청소년단체들의 중심적 역할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보다 체계적인 지원으로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청소년단체협의회 설립·운영 지원 조례안」

충청북도 청소년단체협의회 설립·운영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41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단체”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또는 청소년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청소년단체협의회 설립 및 운영) ① 충청북도를 활동범위로 하는 청소년단체는 단체의 효율적인 운영·발전을 위하여 충청북도 청소년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협의회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로 한다.

③ 협의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 또는 단체등록을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협의회는 사무소를 청소년단체에 둘 수 있다.

제4조(협의회의 사업 등)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협의회 회원인 청소년단체가 행하는 사업과 활동에 대한 협력 및 지원

2. 국내외 청소년단체와의 협력 및 교류
3. 청소년문제와 활동에 대한 조사·연구
4. 우수회원단체, 모범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포상
5. 청소년지도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권익증진 및 교류사업
6.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의 위탁사업
7. 그 밖에 청소년 건전육성 및 청소년단체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회 사업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협의회에 지원하는 사업의 운영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제5조(협조 및 지원) 협의회는 법 제40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와 유기적인 협조 및 지원체제를 확립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

□ 청소년 기본법

제40조(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① 청소년단체는 청소년육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

1. 회원단체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협조·지원
2. 청소년지도자의 연수와 권익 증진
3. 청소년 관련 분야의 국제기구활동
4. 외국 청소년단체와의 교류 및 지원
5. 남·북청소년 및 해외교포청소년과의 교류·지원
6. 청소년활동에 관한 조사·연구·지원
7. 청소년 관련 도서 출판 및 정보 지원
8. 청소년육성을 위한 홍보 및 실천 운동

9. 제41조에 따른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에 대한 협조 및 지원

10. 그 밖에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②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
- ③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④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⑤ 국가는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의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⑥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는 설립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발생한 수익은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의 운영 또는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의 시설 운영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⑦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의 운영과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⑧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는 제1항에 따른 활동의 일부를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41조(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 ① 특정지역을 활동 범위로 하는 청소년 단체는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의 운영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충청북도 청소년단체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바람직한 청소년 육성과 국내외 청소년단체 상호 간 협력 및 교류와 지원
- (사업내용) 국내외 청소년단체와의 협력 및 교류, 청소년 문제와 활동에 대한 조사·연구, 청소년지도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등

2. 비용 발생 요인

- 충청북도 청소년단체협의회가 도내 청소년단체 활성화 및 운영·발전을 위하여 행할 수 있는 사업과 활동에 대한 사업비 등

3. 관련조문

- 안 제4조(시설협회의 사업 등)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으로 하며 '22년 사업 기준 및 청소년단체 활성화를 위한 필요사업 추계

나. 추계 결과

- 연간 7,000천원, 향후 5년간 35,000천원 소요
 - 청소년 정책연구 세미나 : 3,000천원×1식 = 3,000천원
 - 청소년 단체활동 대내외 홍보 : 2,000천원×1식 = 2,000천원
 - 전국 청소년단체 전문연수 참여 : 10명×20만원 = 2,000천원

다. 재원조달방안 : 도비 100%

5. 연도별 비용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세 출		7,000	7,000	7,000	7,000	7,000	35,000
청소년 정책연구 세미나		3,000	3,000	3,000	3,000	3,000	15,000
청소년 단체활동 대내외 홍보		2,000	2,000	2,000	2,000	2,000	10,000
전국 청소년단체 전문연수 참가		2,000	2,000	2,000	2,000	2,000	10,000
재원 조달		7,000	7,000	7,000	7,000	7,000	35,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7,000	7,000	7,000	7,000	7,000	35,000
	지방세	7,000	7,000	7,000	7,000	7,000	35,0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특별회계							
시·군비							
기 타 (차입금, 민자, 예비비 등)							